

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「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」를 이에 공포한다.

2017년 5월 19일

하 동 군 수



하동군 조례 제2223호

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

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2】

국민체육센터 이용료의 감면(제9조 관련)

구 분	감면율 (할인율)	비고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	전액	
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 훈련	전액	
하동군 방문 전지훈련 팀	전액	
하동군 체육회 가맹단체 및 하동군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(연합회) 정기대회	전액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등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또는 가족(유공자1명당 1명)의 경우	50%	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한명을 포함한다)	50%	
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	50%	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	50%	
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의 가족이 하동군으로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(1년 동안 감경)	50%	
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(3명 이상) 가정의 부모 또는 자녀	50%	
군수가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	전액 또는 50%	
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	10%	【별표】의 대상별 이용료 기준
기간회원이 3개월이상 동시 등록시	10%	
기간회원이 6개월이상 동시 등록시	20%	

※ 감면 적용은 일반 이용료 기준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2]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의 감면(제9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감면율 (할인율)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액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 훈련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액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하동군 방목 전지훈련 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액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하동군 체육회 가정단체 및 하동군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(연합회) 정기대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액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또는 가족(유공자1명당 1명)의 경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한명을 포함한다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%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별표]의 대상별 이용료 기준</td> </tr> <tr> <td>군수가 공의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액 또는 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기간회원이 3개월이상 동시 등록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기간회원이 6개월이상 동시 등록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%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감면 적용은 일반 이용료 기준으로 한다.</p>	구 분	감면율 (할인율)	비고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	전액		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 훈련	전액		하동군 방목 전지훈련 팀	전액		하동군 체육회 가정단체 및 하동군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(연합회) 정기대회	전액	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또는 가족(유공자1명당 1명)의 경우	50%		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한명을 포함한다)	50%		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	50%	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	50%		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	10%	[별표]의 대상별 이용료 기준	군수가 공의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	전액 또는 50%		기간회원이 3개월이상 동시 등록시	10%		기간회원이 6개월이상 동시 등록시	20%		<p>[별표2]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의 감면(제9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감면율 (할인율)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액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 훈련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액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하동군 방목 전지훈련 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액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하동군 체육회 가정단체 및 하동군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(연합회) 정기대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액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또는 가족(유공자1명당 1명)의 경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한명을 포함한다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전일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의 가족이 하동군으로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(1년 동안 감경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(3명 이상) 가정의 부모 또는 자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군수가 공의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액 또는 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%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별표]의 대상별 이용료 기준</td> </tr> <tr> <td>기간회원이 3개월이상 동시 등록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기간회원이 6개월이상 동시 등록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%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감면 적용은 일반 이용료 기준으로 한다.</p>	구 분	감면율 (할인율)	비고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	전액		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 훈련	전액		하동군 방목 전지훈련 팀	전액		하동군 체육회 가정단체 및 하동군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(연합회) 정기대회	전액	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또는 가족(유공자1명당 1명)의 경우	50%		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한명을 포함한다)	50%		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	50%	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	50%		전일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의 가족이 하동군으로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(1년 동안 감경)	50%		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(3명 이상) 가정의 부모 또는 자녀	50%		군수가 공의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	전액 또는 50%		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	10%	[별표]의 대상별 이용료 기준	기간회원이 3개월이상 동시 등록시	10%		기간회원이 6개월이상 동시 등록시	20%	
구 분	감면율 (할인율)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	전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 훈련	전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하동군 방목 전지훈련 팀	전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하동군 체육회 가정단체 및 하동군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(연합회) 정기대회	전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또는 가족(유공자1명당 1명)의 경우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한명을 포함한다)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	10%	[별표]의 대상별 이용료 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군수가 공의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	전액 또는 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간회원이 3개월이상 동시 등록시	1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간회원이 6개월이상 동시 등록시	2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감면율 (할인율)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	전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 훈련	전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하동군 방목 전지훈련 팀	전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하동군 체육회 가정단체 및 하동군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(연합회) 정기대회	전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또는 가족(유공자1명당 1명)의 경우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한명을 포함한다)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일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의 가족이 하동군으로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(1년 동안 감경)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(3명 이상) 가정의 부모 또는 자녀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군수가 공의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	전액 또는 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	10%	[별표]의 대상별 이용료 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간회원이 3개월이상 동시 등록시	1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간회원이 6개월이상 동시 등록시	2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